

2025 하나금융그룹 X 세이브더칠드런

「영케어러 가정의 돌봄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한 식사지원사업(2차)」

사업수행기관 공모 안내문

2025. 9.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목 차

I. 후원 기업(하나금융그룹) 및 기관(세이브더칠드런) 소개

II. 사업 소개

1. 배경 및 필요성
2. 사업개요

III. 선정기준

1. 필수조건
2. 심사기준
3. 심사방법
4. 심사결과 발표

IV.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 신청 시 접수할 서류
3. 서류양식 배포처
4. 접수방법

V. 일정 및 선정 절차

【 참고자료 】 아동안전보호정책 요약

I. 후원 기업 및 기관 소개

1.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은 지주사를 중심으로 은행, 증권, 카드 등 15개의 자회사와 전세계 26개국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금융그룹입니다. 2020년 말 'NEXT 2030' 경영원칙을 통해 향후 10년의 성장전략으로 플랫폼, 글로벌, 사회가치 금융을 선정하였으며 글로벌 트렌드 및 경영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의 미션인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ESG경영을 통해 실천하고 있으며,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 파워 온 프로그램으로 일자리 창출 및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나금융그룹 홈페이지(www.hanafn.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세이브더칠드런

모든 아동은 미래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세계 최초의 아동권리기관으로서, 100년 이상 쌓아온 전문성을 기반으로 아동의 삶과 미래를 바꾸어나가는데 앞장섭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생존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아동들의 구호와 복지, 그리고 권리실현을 위해 영국에서 창설되었습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세이브더칠드런은 전 세계 각지에서 빈부, 인종, 국적, 종교, 정치적 이념을 초월하여 모든 아동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보호되며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세이브더칠드런 활동은 1953년 한국전쟁 이후 전쟁고아를 위한 지원으로 시작되었으며,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는 국내의 아동권리옹호, 아동보호, 보건의료, 아동교육 및 발달 지원사업과 국제 개발사업, 인도적 지원(긴급구호)사업 등을 활발하게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II. 사업 소개

1. 배경 및 필요성

- 성장 및 미래를 준비해야하는 시기에 가족 부양의 부담을 떠안는 영케어러(가족돌봄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증가하고 있음. (관계부처 합동, 2022).
- 영케어러는 당장 직면해 있는 돌봄과 생계 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진로 및 학업 병행에 어려움을 경험함.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초점집단 인터뷰, 2022)
- 현재 영케어러에 대한 지원 역시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 영케어러는 돌봄 활동 중 요리·청소·빨래 등 집안일을 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그 중 본인과 가족의 끼니를 챙기는 일은 일상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해야되는 돌봄인 동시에 생존과도 직결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문제와 맞닿아 있음.
- ‘식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영케어러와 가족에게 있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식사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기본적인 권리 보장의 토대 하에 영케어러들이 본인의 미래를 설계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
- 2025년 4월 1차 지원에 이어 2차 지원 대상을 확대 진행하고자 함.

2. 사업개요

1) 사업대상 : 영케어러(가족돌봄아동·청소년) 총 611명 (1차 500명 포함 총 1,111명)

2)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중 아래 해당되는 자

가. 전국의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과 동거 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나. 조손가정의 경우, 사례관리자가 판단하기에 가족 돌봄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판단되는 아동·청소년

1. 전국의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 정의

: “육체적·정신적 제약(① 시각장애, ② 청각장애, ③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육체적 제약, ④ 기억하거나 집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정신적 제약, ⑤ 스스로 옷 입기, 목욕하기, 밥 먹기 등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지적·자폐성 장애, ⑥ 언어장애) 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가구원”(복지부 2022년 실태조사의 조작적 정의)) + 기타 가사, 일상, 약국·병원 동행, 감정 지원 등 생활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구원

2. 가구원 범주

: 돌봄의 대상을 ‘함께 거주하는 가족’으로 한정

3. 가족 돌봄에 대한 부담

: 노화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한 조부모 대신 경제활동을 하거나, 조부모 병원 동행 및 간병을 해야 하는 아동·청소년 등

3) 지원기간: 2025년 10월 ~ 2026년 6월 (10개월, 40주)

4) 주요 사업 내용

구분	내용	시기
지원 아동 발굴	- 사업수행기관 선정: 사회복지기관(가족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청년미래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대상 공모 통해 참여 기관 선정 - 지원 아동 발굴: 사업수행기관 1개소 당 최소 3명 이상 ※ 기관의 기존 사례관리 대상 외 지역사회에서 식사 지원이 필요한 영케어러 가구 사례 적극 발굴 ※ 지자체와 적극 협업 (아동급식지원사업 대상자 중복 확인, 신규 대상자 추천 등) ※ 사각지대 아동 우선 지원	2025. 9월
건강한 식사지원	- 식사지원 전 부양부담에 대한 설문 및 스트레스 척도 조사 실시 √ 연 2회(사업 시작 시/종결 시) 설문 실시하여 지원 후 변화 확인 - 사업수행기관에서 가정 당 주 1회(3식) 가정으로 배달 √ 조리 완제품: 저염식, 건강식 위주의 밑반찬으로 3식 가능한 분량으로 구성 ※ 식단은 기관 영양사 및 외부의 검증된 식단표를 통해 구성 ※ 사업수행기관 직접 또는 외주업체(계약) 통해 지원 단, 외주업체(계약) 이용 시 사전 업체 방문 및 시식 필수 사업수행기관 수행 하기 2가지 방법 중 택 1 하여 진행 1) 관내 조리시설, 영양사 및 식단표 구비 가능한 경우, 직접 지원 가능 2) 사업수행기관에서 외주 업체와 계약하여 식사 지원(배송 방법 업체와 논의) ※ 다화용기 사용 권장	2025.10월~ 2026.6월 (40주)
선물꾸러미 지원	- 상반기 1회 특식 선물꾸러미 지원 - 5월 가정의 달을 기념하여 케이크, 과일, 영양제 등으로 구성하여 각 가정으로 전달	2026.5월 중
사례관리	- 사업수행기관 사례관리자 격월 1회 유선 및 대면 모니터링하여 사례관리 진행 - 사업 지원 기간 중 대면 모니터링 3회 이상 실시 필수 - 식사지원 이외에 사업수행기관 차원의 사례관리 필수 - 사례관리일지 작성하여 관리 - 외주 업체 계약 및 이용 시, 연 1회 모니터링(시식 포함) 필수	2025.10월~ 2026.6월

5) 지원금액 (* 선정 아동 인원 및 지원금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금액은 지원아동 수 및 식사지원 집행여부에 따라 사업비 결정예정

구분	산출내역	비고
식사지원 (기관 집행)	- 1세트 당 120만원 기준 ※ 산정방법 ✓ 1식 당 10,000원, 주 3식 지원 기준 => 1주 당 30,000원 ✓ 1주 당 30,000원 x 4주 x 10개월 = 1,200,000원 - 다자녀 가구 2세트 이상 지원 가능 - 사업수행기관에서 완제품 직접 조리 또는 식사 업체 계약하는 경우에만 지급함.	아동 당 1,200천원
선물꾸러미 제공	- 지원 아동 1명 당 50,000원 ※ 산정방법 ✓ 50,000원 x 1회 = 50,000원 ✓ 식재료, 영양간식, 과일, 디저트 등 인당 5만원 기준 특식	연 1회
사례관리	- 참여기관 사례관리비 ✓ 1가구 x 5만원 = 50,000원 ✓ 가정방문 및 특식 배송 등 유류비 사용 (기관카드결제, 차량일지 작성) ✓ 택배요금, 배송비, 부가세 ✓ 스티커제작, 보냉백, 도시락 용기 구입 ✓ 보호자 또는 아동 간담회 다과비 사용(1인 5천원 이내) ✓ 자문비: 1회 2만원 기준(유선 및 이메일 자문 기준) (예: 식단표 자문 -자문식단표, 지급증, 이체증) ✓ 업체 계약시 모니터링비 ※출장비,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불가	아동 당 50천원

III. 선정기준

1. 필수조건

- 1)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을 준수하며,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안전보호정책(참고자료 참조)을 직무 수행 과정과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함
- 2) 본 사업의 목적을 이해하고 협력기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의지와 역량을 갖추어야 함
- 3) 공모 신청 시 지원하고자 하는 사례 전체를 확보해 선정 즉시 지원 가능한 상태여야 함
- 4) 지원 아동에 대한 개별 사례관리를 진행하여야 함
- 5) 회계처리에 투명성을 기하고, 세이브더칠드런의 기관 및 아동 모니터링에 협조하여야 함
- 6) 사업운영 통장은 0원 하나은행 필수 사용(없는 경우 신규계좌 개설 필요)

2. 심사기준

아래의 내용을 토대로 내부 심사기준에 의거해 협력 여부와 사업비를 결정함

- 1) **실무자 역량**: 담당 사회복지사의 사업목적 이해, 사업관리 계획, 지역 내 다양한 자원 활용능력 등
- 2) **사업운영경험**: 신청 기관의 결식 지원/영양지원 등 유사 사업 운영 경험, 사업운영 방법의 전문성, 업체 활용방안 등
- 3) **식사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 발굴 및 대상의 적절성**: 주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영케어러 아동 발굴
- 4) **사례관리 능력**: 기관의 아동 사례관리 전문성

3. 심사방법

- 서류심사, 실무자 전화 인터뷰(필요시 진행)

4. 심사 결과 발표

- 1) 2025년 9월 5째주 세이브더칠드런 담당 아동권리센터에서 공문발송 및 이메일 연락
- 2) 선정된 기관은 세이브더칠드런 담당 아동권리센터에 사업참여동의서 등 추가 서류 제출 필요

IV. 신청방법

1. 신청 기간

- 2025년 9월 15일(월) ~ 2025년 9월 26일(금) 18:00 까지

2. 신청 시 접수할 서류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구분	제출서류
금번 제출서류	1. 사업신청 공문(기관 자체 양식) 1부 2. [서식1] 사업신청서(기관용) 1부 3. [서식2] 사업 담당자 개인정보 및 초상권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기관용) 1부 4. [서식3] 지원아동 명단 1부 5. 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아래 제시된 서류는 협력기관 선정 후 제출해야하는 서류이므로, 사업신청 시에는 제출하지 않음

추가 제출서류 (공통)	[협력기관 대상] 1. 사업비 입금 통장사본 1부(기관 명의): 하나은행계좌 필수!! * 사업수행기관 직접 또는 외주업체 계약을 통한 식사지원일 경우 잔액 '0원' 계좌 제출 *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외주업체 계약하여 식사지원하는 경우 '0원' 계좌 해당없음 2. 사업참여동의서 3. 아동안전보호정책 이행확약서 4. [서식3] 지원아동 최종 명단 1부
	[지원가구 대상] 1. 주민등록등본 가구 당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당 1부 3. 돌봄 대상자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그 외 돌봄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구 당 1부 4. 사업참여동의서 가구 당 1부
일반서류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증명서 [일반] *2024년 기준 소득활동이 있는 가족구성원 모두 제출 1. 건강보험자격(통보)확인서 2. (직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 (지역) 지역보험료 납부확인서
	기타 사항 • 사례에 따라 서류 일부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세이브더칠드런과의 논의를 통해 대체 서류 및 생략 여부 결정 • 모든 서류는 2025년 3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

- ※ 각종 서류 제출 시, **개인식별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는 반드시 삭제처리하여 제출함.
 개인식별고유번호 포함 시 제출서류는 일괄 반송처리 함
- ※ 선정 이후 제출 필요한 아동안전보호정책 관련 서류 및 사업참여동의서는 추후 제공 예정

3. 서류양식 배포처

- 첨부된 신청 서식 활용하여 서류 작성 및 준비
- 4. 접수 방법 참조하여 기한 내 서류 제출
- 제출 문의 : 관할지역 접수처 지역본부 담당자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 ☎032-323-5100)

4. 접수 방법

- 아래 관할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센터 담당자 메일로 신청 서류 일체 발송

구분	관할지역	담당자	전화번호	접수처(이메일)
경인 지역본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인천광역시,	김소연 (인천아동 권리센터)	032-323-5100	kychild@sc.or.kr
중부 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세종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김수연 (대전아동 권리센터)	042-542-0116	sooyeon.kim@sc.or.kr
남부 지역본부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권수연 (부산아동 권리센터)	051-758-7731	suyeon.kwon@sc.or.kr

V. 일정 및 선정 절차 ※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	일정	비고
협력기관 공개모집 (신청서 접수)	9/15(월) ~ 9/26(금)	세이브더칠드런 관할 아동권리센터에 이메일 제출
신청서류 심사	9/29(월) ~ 10/01(수)	제출 서류 보완 요청 및 실무자 전화 인터뷰(필요 시)
선정 협력기관 발표	10/02(목)	세이브더칠드런 관할 아동권리센터 (공문/이메일)
추가서류 일체 제출	10/10(금) ~ 10/14(화)	세이브더칠드런 관할 아동권리센터에 이메일 제출
실무자 간담회 / (사업준비 및 업체선정)	~ 10월 15일(수)까지	관할 아동권리센터 주관 사업설명회 및 아동안전보호정책교육
사업비 지급	10월 15일(수)	
식사지원 시작	10월 20일(월) ~	4째주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안전보호정책

정책의 목적과 적용 대상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권리를 주창한 세계 최초의 아동권리기관으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과 참여의 권리 실현을 위해 일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목표는 세계 모든 아동이 위험한 환경에서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이브더칠드런 임직원은 물론,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일하는 자원봉사자, 협력기관 직원, 아동을 만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하 ‘세이브더칠드런 직원 등’) 모두가 아동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은 나이, 성별, 장애, 문화, 인종, 종교, 성적체성 등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학대와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학대와 성착취는 인권침해이자 범죄이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에서 명시한 아동권리 실현을 목표로 하는 세이브더칠드런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직원 등’에 의해 발생한 우발적이거나 고의적인 피해와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안전보호정책」, 「아동안전보호 행동강령」, 「윤리행동강령」 등의 정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위험에 바로 대응하기 위한 세이브더칠드런의 약속이자 노력입니다. 업무는 물론 일상 생활에서도 행동강령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아동,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후원자에 대한 우리의 책무입니다.

아동안전보호 행동강령

‘세이브더칠드런 직원 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나는 체벌을 포함한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착취, 방임과 같은 아동학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 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는 아동 동의와 상관없이 어떤 형태의 성접촉이나 성관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나는 아동성착취물을 보거나, 저장, 제작, 배포하지 않겠습니다.
- 나는 아동에게 돈, 현물, 서비스를 주고 그 댓가로 성적 행위(예, 신체노출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 나의 태도, 언어, 표정 등으로 아동이 모욕감이나 경멸감 등을 느끼지 않도록 행동하겠습니다.
- 나는 오해할 수 있는 장소에 아동과 단 둘이 있지 않겠습니다.
- 나는 의도적으로 특정 아동과 가족을 배제하거나 편애하지 않겠습니다.
- 나는 업무에서 수집한 아동의 개인정보와 이미지를 개인 목적(예, SNS 올리기)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나는 아동의 이름, 이미지, 위치에 관한 3가지 정보를 동시에 노출하지 않겠습니다.
- 나는 아동과 함께 있을 때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고 술, 담배 등 유해한 물건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나는 우리와 사업참여자, 아동과 성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힘의 불균형을 인식하고, 이를 남용하지 않겠습니다.
- 나는 아동학대나 아동안전보호 행동강령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하거나 알았을 때,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우려사항 보고

-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세이프더칠드런 직원 등'에 의한 부적절한 행위가 염려될 경우, 24시간 안에 세이프더칠드런 담당자 (담당자명 000, 기관연락처) 또는 childsafeguarding@sc.or.kr, 02-6900-4496로 보고합니다.
- 보고 내용은 관련자 외 비밀을 유지합니다.
- 아동이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는 바로 112에 신고하고, 세이프더칠드런 담당자에게 알립니다.
- 이 모든 경우에 세이프더칠드런 담당자는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합니다.